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- 74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1. 9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상위 법령인 「도로법」 및 「도로법 시행령」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등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도로법의 위임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징수조항과 별표5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직접 신설 규정하여 그동안 본 조례에서 규정해온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과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각각 삭제함

나. 도로법 시행령의 차량 진출입로 점용료 산정기준이 0.025에서 0.02로 인하됨에 따라 자동차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이상 시설과 기타 차량 진출입로의 산정 기준을 0.02 및 0.016로 각각 인하함 (안 별표 1 제4호)

다. 도로법 시행령에서 도로 점용료 산정 시 토지가격으로 적용되는 '인접한 토지'를 '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(도로부지는 제외한다)'로 명확히 규정한 내용을 반영함(안 별표 1 비고 제1호)

라.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 등 중 현수막은 기존에 제사나 종교행사 용도로 일시 설치하는 경우만 허가대상으로 규정되었으나 '그 밖의 용도'를 추가하는 등 상위 법령의 기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함.(안 별표 1 제3호)

3. 개정근거

「도로법」 제38조,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28조, 제42조, 제74조

4. 개정조례안 : 따로붙임

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11. 8. 25. ~ 2011. 9. 14.(제출된 의견 없음)

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(2011. 9. 22)

다.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라. 신구조문 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중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도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“부령”이라 한다)”을 “「도로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”으로 하고, “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도로관리청인 도로(이하 “도로”라 한다)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 제24조제5항 제11호”를 “「도로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8조제5항제9호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법 제41조제2항 및 영 제26조의2제2항”을 “「도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1조제2항 및 영 제42조제2항”으로, “별표1”을 “별표 1”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중 “점용료등의 부과·징수”를 “점용료 등의 부과·징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영 제24조”를 “영 제28조”로 하고, “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도로”를 “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도로관리청인 도로(이하 “도로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

조 제3항 중 “1년미만”을 “1년 미만”으로, “도로 점용허가”를 “도로점용허가”로, “1년이상”을 “1년 이상”으로, “매회계연도”를 “매 회계연도”로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, “개시후”를 “개시 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1월 이내”를 “1월 이내”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중 “점용료등의 분할납부”를 “점용료 등의 분할납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「지방세법」 제41조”를 “「지방세기본법」 제80조”로 하고, 제2항 중 “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56조제2항”을 “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71조제3항”으로, “「지방세법」 제41조”를 “「지방세기본법」 제80조”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중 “점용료등의 조정”을 “점용료 등의 조정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연도이상”을 “연도 이상”으로, “별표1”을 “별표 1”로, “납부하여야 할”을 “납부하여야 할”로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, “영 별표3”을 “영 별표 3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 중 “제20조”를 “제24조”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중 “점용료등의”를 “점용료 등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납부기한내에”를 “납부기한 내에”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중 “점용료등의”를 “점용료 등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감면 받는”을 “감면받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제84조”를 “법제84조”로, “점용료중”을 “점용료 중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56조의2”를 “제73조”로 한다.

제9조의2를 삭제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법제38조”를 “법 제38조”로 하고, “제33조제1항제2호”를 “제42조제1항제2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」”로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, “관계없이”를 “관계 없이”로, “서울특별시마포구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」”로 한다.

“별표1”을 “별표 1”로 하고, “별표 2”를 삭제한다.

별표 1 중 제3호란과 제4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비고 제1호 전단 및 후단 중 “인접한 토지”를 각각 “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(도로부지는 제외한다)”로 하고, 비고 제4호 중 “단위당 점용료”를 “점용료”로 하며, “100원미만”을 “100원 미만”으로 하고, 비고 제5호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3. 광고탑·광고판·간판(돌출간판을 포함한다)·현수막·사설안내표지·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	광고탑·광고판·간판(돌출간판을 제외한다)	일시 설치한 것(1월 미만 점용)	표시면적 1㎡	1일	400
		기타		1년	122,000
	돌출간판		표시면적 1㎡	1년	58,400
	사설안내표지		1개	1년	101,650
	현수막(제사나 종교행사 및 그 밖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)		표시면적 1㎡	1일	400
	아치	도로횡단	표시면적 1㎡	1년	244,000
기타		122,000			
4. 주유소·주차장·여객자동차터미널·화물터미널·자동차수리소·승강대·화물적치장·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	건축물	1층인 건축물	점용면적 1㎡	1년	토지가격에 0.05를 곱한 금액
		2층인 건축물			토지가격에 0.055를 곱한 금액
		3층인 건축물			토지가격에 0.06을 곱한 금액
		4층이상인 건축물			토지가격에 0.065를 곱한 금액
	진·출입로	자동차관련시설(주유소·주차장·여객자동차터미널·화물터미널·자동차수리소·승강대·화물적치장·휴게소 등) 및 부설주차장 10면이상 위에 해당되지 않는 진출·입로			토지가격에 0.02를 곱한 금액
		기			
					토지가격에 0.05를 곱한 금액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</u></p>	<p><u>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</u></p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“부령”이라 한다)의 규정에 의하여 <u>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도로관리청인 도로(이하 “도로”라 한다)의 점용허가, 점용료·변상금,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도로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----- <u>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</u> -----</p>
<p>제2조(도로점용허가) 공작물·물건·그 밖의 시설물로서 <u>영 제24조제5항 제11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 점용허가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1. ~ 3. (생략)</p>	<p>제2조(도로점용허가) ----- 「도로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8조제5항제9호에-----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점용료의 산정기준) <u>법 제41조제2항 및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.</u></p>	<p>제3조(점용료의 산정기준) 「도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1조제2항 및 <u>영 제42조제2항</u> ----- - <u>별표 1</u>-----</p>
<p>제4조(점용료등의 부과·징수) ① <u>법 제38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,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·징수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4조(점용료 등의 부과·징수) ① ----- <u>영 제28조</u>----- <u>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도로관리청인 도로(이하 “도로”라 한다)</u>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③ 점용기간이 <u>1년미만</u>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<u>도로 점용허가</u>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·징수하고, 점용기간이 <u>1년이상</u>인 경우에는 <u>매회계연도</u> 단위로 부과하되, <u>당해</u> 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,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<u>개시후</u> 3월 이내에 부과·징수한다.</p>	<p>③ ----- <u>1년 미만</u> ----- ----- <u>도로점용허가</u> ----- ----- <u>1년 이상</u> ----- <u>매 회계연도</u> ----- ----- <u>해당</u> ----- ----- <u>개시 후</u> -----</p>
<p>④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·징수하되,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<u>1월</u>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.</p>	<p>④ ----- <u>1월</u> 이 내 -----</p>
<p>⑤ (생략)</p>	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점용료등의 분할납부)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「지방세법」 제4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제5조(점용료 등의 분할납부) ① ----- ----- 「<u>지방세기본법</u>」 제80조 ----- -----</p>
<p>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56조제2항에 따른 이자로 한다. 다만, 「지방세법」 제4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.</p>	<p>② ----- 「<u>국유재산법</u> 시행령」 제71조제3항 ----- ----- 「<u>지방세기본법</u>」 제80조 ----- -----</p>
<p>제6조(점용료등의 조정)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<u>별표1</u>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<u>납부하여</u>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<u>당해</u> 연도의 점용료는 <u>영 별표3</u>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.</p>	<p>제6조(점용료 등의 조정) ① ----- ----- <u>연도 이상</u> ----- ----- <u>별표 1</u> ----- ----- <u>납부하여</u> <u>야 할</u> ----- ----- <u>해당</u> ----- ----- <u>영 별표 3</u> ----- -----</p>
<p>② (생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점용료의 감면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「도로법 시행규칙」 제20조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</p> <p>2. ~ 4. (생략)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7조(점용료의 감면) ① ----- ----- -----</p> <p>1. ----- ----- ----- <u>제24조</u> ----- -----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점용료등의 가산금 및 독촉)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<u>납부기한내에</u>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. 이 경우,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「국세징수법」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8조(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) ① ----- ----- <u>납부기한 내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점용료등의 소액징수 및 반환)</p> <p>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,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<u>감면 받는</u> 경우를 제외한다.</p> <p>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<u>법제84조</u>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<u>점용료중</u>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</p>	<p>제9조(점용료 등의 소액징수 및 반환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<u>감면받는</u> ----- -----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법 제84조</u> ----- ----- <u>점용료 중</u> ----- -----</p> <p>③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 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56조의2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제73조 ----- -----</p>
<p><u>제9조의2(과태료 부과·징수) 구청장은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.</u></p>	<p>(삭제)</p>
<p>제9조의3(점용물의 철거 등) ① ~ ④ (생략)</p>	<p>제9조의3(점용물의 철거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(수수료의 징수) ① <u>법제38조</u>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「도로법 시행규칙」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, 서울특별시장의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」에 따라 당해 허가신청을 수리하는 구청장이 징수한다. 이 경우,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<u>관계없이 서울특별시 마포구</u>(이하 “구”라 한다) 수입으로 한다.</p>	<p>제10조(수수료의 징수) ① <u>법 제38조</u> ----- ----- 제42조제1항 제2호 -----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「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」 ----- 해 달 ----- ----- <u>관계 없이 서울특별</u> <u>시 마포구</u>----- -----</p>
<p>제11조(세입 구분) ① 「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」에 따라 구청장이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(서울특별시장의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한한다)은 서울특별시의 수입으로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1조(세입 구분) ① 「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」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</p>

별표1

점용료 산정기준(제3조 관련)

점 용 물 의 종류	기 준 단 위		점 용 료 (단위:원)
	점용단위	기간단위	
1.(생략) 2.(생략) 3.현수막 (제사나 종교행사 의 용도로 일시 설치 한것을 포 함한다)	(생략)	(생략)	(생략)
4.진·출입로 자 동 차 관 련 시 설 및 부 설 주 차 장 10 면 이 상	(생략)	(생략)	<u>토지가격</u> <u>에0.025를</u> <u>곱한 금액</u>
위에 해당 되지 않는 진·출입 로	(생략)	(생략)	<u>토지가격</u> <u>에0.020를</u> <u>곱한 금액</u>
5.~11.(생략)			

※ 비고

1.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「부동산 가
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
개별공시지가로 한다. 이 경우 인접토지가
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
술평균가격으로 한다.

2 ~ 3. (생략)

4.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

별표 1

점용료 산정기준(제3조 관련)

점 용 물 의 종류	기 준 단 위		점 용 료 (단위:원)
	점용단위	기간단위	
1.(현행과같음) 2.(현행과같음) 3.현수막 (제사나 종교행사 및 그 밖 의 용도로 일시 설치 한 것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4.진·출입로 자 동 차 관 련 시 설 및 부 설 주 차 장 10 면 이 상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<u>토지가격</u> <u>에0.02를</u> <u>곱한 금액</u>
위에 해당 되지 않는 진·출입 로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<u>토지가격</u> <u>에0.016을</u> <u>곱한 금액</u>
5.~11.(현행과 같음)			

※ 비고

1.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
토지(도로부지는 제외한다)의 「부동산 가
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
개별공시지가로 한다. 이 경우 도로점용
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(도로부지는 제외한
다)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
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.

2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

<p>그 산정한 금액 중 <u>100원미만</u>은 절사한다.</p> <p>5.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<u>당해</u>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외경으로 한다.</p> <p>6 ~ 8. (생략)</p>	<p>정한 금액 중 <u>100원 미만</u>은 절사한다.</p> <p>5.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<u>해당</u>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외경으로 한다.</p> <p>6. ~ 8. (현행과 같음)</p>
<p><u>별표2 (생략)</u></p>	<p><u>별표2 (삭제)</u></p>